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: 박순규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중무, 김태수, 김평남,
김혜련, 박기열, 박상구,
성흠제, 송아량, 이정인,
장상기, 전석기, 최웅식,
황규복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2021년 1년 동안 유기·유실되어 보호 조치된 동물은 개 2,784마리를 포함하여 5,605마리이고 이 중 2,273마리가 입양 또는 기증되었음.
- 한번 유기된 동물이 또다시 학대를 받거나 유기되지 않고 분양·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걱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·기증을 받는 자에게 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분양·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걱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·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.(안 제15조제2항)
- 나. 유기 동물의 입양 시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게 사육·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.(안 제16조제5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“(유기동물의 입양)”을“(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·기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분양·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·기증을 받는 사람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제5항제3호의 “할”을 “하고 적정하게 사육·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II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유기동물의 입양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·기증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장은 분양·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·기증을 받는 사람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21조의 “동물을 애호하는 자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3.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</p>	<p>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하 <u>고 적정하게 사육·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